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광희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7045
----------	-------

발의연월일 : 2026. 2. 25.

발 의 자 : 이광희 · 양문석 · 김태년
채현일 · 임미애 · 김우영
이재강 · 박성준 · 이주희
문금주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기관을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지역 특성과 공공기관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을 혁신도시 외의 지역으로도 이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인구감소로 지역소멸이 우려되거나 지리적·기능적으로 인구를 유지할 필요성이 높은 지역의 경우에는 혁신도시가 아니더라도 공공기관 이전을 통해 인구 유입을 도모할 필요성이 있는데, 현행법에는 이러한 목적으로 공공기관을 혁신도시 외의 지역으로 이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인구소멸 위기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혁신도시가 아닌 지역으로 공공기관을 이전할 수 있는 사유에 ‘지역 인구 유지 및 인구소멸 위기 대응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를 추가함으로써 인구감소지역 회복 및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

임(안 제29조제1항).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 단서 중 “지역의 특성과 이전공공기관의 특수성이 인정되는”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지역의 특성과 이전공공기관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
2. 지역 인구 유지 및 인구소멸 위기 대응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전공공기관의 개별이전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 제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방이전계획에 관한 승인을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9조(이전공공기관의 지방이전) ① 이전공공기관은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u>지역의 특성과 이전공공기관의 특수성이 인정되는</u>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이전공공기관과 이전공공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의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2조에 따라 지방시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혁신도시 외로 개별이전을 인정할 수 있다. <u><신 설></u> <u><신 설></u> ② · ③ (생략)	제29조(이전공공기관의 지방이전) ① ----- -----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u>----- ----- ----- ----- ----- ----- ----- -----. <u>1. 지역의 특성과 이전공공기관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u> <u>2. 지역 인구 유지 및 인구소멸 위기 대응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u> ② · ③ (현행과 같음)